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95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소병훈 · 박희승 · 박상혁
이개호 · 강준현 · 권칠승
박 정 · 조계원 · 김 윤
김원이 · 이성윤 · 허 영
용혜인 · 강득구 · 어기구
이수진 · 김주영 · 부승찬
이주희 · 강경숙 · 안태준
의원(21인)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심사 등을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장의 사각 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 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계 법령 에 따라 조사·심사 등을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 다.</u></p>